

7.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

법률 제5,425호 1997. 12. 13

주 요 골 자

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보육시설의 보육용 기자재에 대하여도 특별소비세를 면제함(법 제18조제1항).

개 정 이 유

현재 유아원의 교육용으로 구입하는 기자재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면제되고 있으나,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보육시설의 경우 보육용 기자재의 구입 시 세제상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, 보육시설의 아동의 보육여건의 개선과 보육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보육시설의 보육용 기자재에 대하여도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도록 하려는 것임.

주 요 내 용

특별소비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8조제1항제8호중 “학교”를 “학교·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(이하 이 전에

서 “보육시설”이라 한다)”로 하고, 동항 제16호중 “학교교육용”을 “학교교육용·보육시설보육용”으로 하며, 동항제17조중 “통신용 또는 학교교육용의 것”을 “통신용·학교교육용 또는 보육시설보육용의

것"으로 한다.

②(적용예)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
과세대상물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
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.

- 부 칙 -
①(시행일)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
시행한다.

주택회보